

의안번호	2210420
의 퇴 인	정춘생의원
회 답 일	2025. 7. 11.
추 계 번호	25D28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탁금 반환 규정을 완화하고 선거비용 보전율을 상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9억 1,300만원, 2030년 160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간 374억 1,300만원(연평균 74억 8,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계	연평균
기탁금 반환 규정 완화 (안 제57조제1항)	852	—	374	—	852	2,078	416
선거비용 보전율 상향 (안 제122조의2제1항)	14,061	—	6,054	—	15,220	35,335	7,067
합계	14,913	—	6,428	—	16,072	37,413	7,483

주: 1. 기탁금 반환 규정 완화(안 제57조제1항)과 선거비용 보전율 상향(안 제122조의2제1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장 최근의 공직선거별 후보자 수, 선거비용 보전 집행액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7조제1항 (기탁금의 반환 등)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득표율(득표수÷유효투표총수)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 -여성후보자의 득표율 10% 이상인 경우 기탁금 전액 -여성후보자의 득표율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기탁금의 70% -후보자의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기탁금의 70% -후보자의 득표율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기탁금의 50%	의무 규정
2	안 제122조의2제1항 (선거비용의 보전 등)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7조제1항 (기탁금의 반환 등)	0	-
2	안 제122조의2제1항 (선거비용의 보전 등)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기탁금 반환 규정이 완화되어 반환액이 증가하고, 선거비용 보전율이 상향되어 보전액이 증가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표 2]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기탁금 반환	득표율 15% 이상 기탁금 전액 반환	여성후보자 득표율 10% 이상 기탁금 전액 반환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기탁금 50% 반환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기탁금 70% 반환 -여성후보자 득표율 5% 이상 기탁금 70% 반환
	-	득표율 5% 이상 10% 미만 기탁금 50% 반환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선거비용 50% 보전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선거비용 70% 보전
	-	득표율 5% 이상 10% 미만 선거비용 50% 보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보궐선거는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 등 관련 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참고
 - 다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성별, 득표율을 조사한 결과, 개정안에 따른 기탁금 반환,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어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본 추계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수, 득표율,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바탕으로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탁금 반환 규정 완화(안 제57조제1항)

- 기탁금 반환 특례 대상에 여성을 추가하고, 반환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탁금 반환 규정을 완화하여 기탁금 반환 대상자 수 및 반환액 증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본 추계에서는 각 공직선거별 기탁금액, 반환 대상자 수, 추가 반환율을 곱하여 산출
 -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은 시·도지사 5,000만원, 구·시·군의 장 1,000만원, 시·도의원 300만원, 구·시·군의원 200만원이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은 1,500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
 - 반환 대상자 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활용
 - 추가 반환율은 10%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는 50%²⁾, 5%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는 70%³⁾,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20%⁴⁾,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50%⁵⁾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1.9%	2.0%	2.0%	2.0%	2.0%

- 2) 현행법에 따라 10% 이상 15% 미만 후보자는 기탁금 50% 반환이고, 개정안에서는 여성후보자에 한하여 전액 반환으로 규정하여 추가 반환율은 50%
- 3) 현행법에 따라 5% 이상 10% 미만 후보자는 기탁금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0%이고, 개정안에서는 여성후보자에 한하여 70% 반환으로 규정하여 추가 반환율은 70%
- 4) 현행법에 따라 10% 이상 15% 미만 후보자는 기탁금 50% 반환이고, 개정안은 70% 반환으로 규정하여 추가 반환율은 20%
- 5) 현행법에 따라 5% 이상 10% 미만 후보자는 기탁금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0%이고, 개정안에서는 50%

[표 3] 기탁금 반환 규정 완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과정

(단위: 원, 명)

구분		기탁금	대상자 수		추가 반환율	추가재정소요
지 선	시·도지사	50,000,000	10%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	1	50%	25,000,000
	구·시·군의 장	10,000,000	10%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	1	50%	5,000,000
			5% 이상 득표한 여 성후보자	1	70%	7,000,000
			10% 이상 15% 미 만 득표한 후보자	18	20%	36,000,000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	20	50%	100,000,000
	시·도의원	3,000,000	5% 이상 득표한 여 성후보자	7	70%	14,700,000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	18	50%	27,000,000
	구·시·군의원	2,000,000	10%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	101	50%	101,000,000
			5% 이상 득표한 여 성후보자	62	70%	86,800,000
			10% 이상 15% 미 만 득표한 후보자	466	20%	186,400,000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	263	50%	263,000,000
	소계					
국 선	지역구	15,000,000	10%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	3	50%	22,500,000
			5% 이상 득표한 여 성후보자	6	70%	63,000,000
			10% 이상 15% 미 만 득표한 후보자	16	20%	48,000,000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	32	50%	240,000,000
	소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반환으로 규정하여 추가 반환율은 50%

- 추계결과, 기탁금 반환 규정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과 2030년은 8억 5,200만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2028년에는 3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기탁금 반환 규정 완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기탁금 반환	852	—	374	—	8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선거비용 보전을 상향(안 제122조의2제1항)

-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여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 수 및 보전액 증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본 추계에서는 각 공직선거별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보전 대상자 수, 추가 보전율을 곱하여 산출
 - 공직선거별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에 따라 상승
 -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보전대상 후보자 수, 보전율, 보전액 등을 활용하여 추정
 - 보전 대상자 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활용
 - 추가 보전율은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20%⁶⁾,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50%⁷⁾

6) 현행법에 따라 10% 이상 15% 미만 후보자는 선거비용 50% 보전이고, 개정안은 70% 보전으로 규정하여 추가 보전율은 20%

7) 현행법에 따라 5% 이상 10% 미만 후보자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니므로 0%이고, 개정안에서는 50% 보전으로 규정하여 추가 반환율은 50%

[표 5] 선거비용 보전을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과정

(단위: 원, 명)

구분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대상자 수		추가 보전율	추가재정소요
지 선	시·도지사	1,344,997,171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	1	50%	672,498,585
	구·시·군의 장	143,009,854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	20	20%	572,039,416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	21	50%	1,501,603,466
	시·도의원	44,833,478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	17	20%	152,433,824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	28	50%	627,668,685
	구·시·군의원	34,976,863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	561	20%	3,924,404,065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	378	50%	6,610,627,168
	소계					14,061,275,209
국 선	지역구	171,017,945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	17	20%	581,461,013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	64	50%	5,472,574,240
	소계					6,054,035,253

주: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을 적용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년 기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8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선거비용 보전율을 상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0억 6,100만원, 2030년 152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선거비용 보전을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선거비용 보전율 상향	14,061	—	6,054	—	15,2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탁금 반환 규정을 완화하고 선거비용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9억 1,300만원, 2030년 160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간 374억 1,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 계
기탁금 반환 규정 완화	852	—	374	—	852	2,078
선거비용 보전율 상향	14,061	—	6,054	—	15,220	35,335
합계	14,913	—	6,428	—	16,072	37,4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수, 득표율,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